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30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 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은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신, ‘농산업’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정책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농산업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이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직농장·스마트팜 등의 분야에서 거대 기업 자본의 농업 분야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고, 기존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농산업’의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부처 내·외부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농산업 개념 도입 과정에서 각계의 찬·반의견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조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